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97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 의 자 : 한정애 · 윤미향 · 이원욱
김민석 · 김홍걸 · 강훈식
정성호 · 이성만 · 최인호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 해당함)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면서 「의료법」 또는 「약사법」과 현행법에 따라 폐업 시 신고 의무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

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기도 함.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생략)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u>	② ----- ----- ----- ----- ----- ----- ----- ----- ----. <단서 삭제>
1. <u>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u>	<삭 제>
2. <u>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u>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